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의무 규정〉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3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촌, 산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략)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외에 대통령령으로-----.
<신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신설>	2.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신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대구, 강원, 경남, 제주에서는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순회 보건교사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구 분	순회 근무 보건교사 수	순회 학교 수	비고
대 구	1	6	교육지원청 배치
강 원	96	201	인근학교 보건교육 지원
경 남	37	108	
제 주	1	3	

※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순회 보건교사 미운영

자료: 교육부

그러나, 농·산·어촌 등에서는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최근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농·산·어촌

1)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2)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순회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농·산·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5-171호)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수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읍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붙임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참조

개정안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등에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직무⁴⁾를 수행하는 보건교사를 둘 경우,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응급 대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데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⁵⁾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데 2026년 294억 3,600만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1,463억 2,100만원(연평균 292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4)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5) 추계번호 24C188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구감소지역 보건교사 (안 제15조제2항제3호)	29,436	27,510	28,584	29,697	31,094	146,321	29,264

주 1)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교 학교수(국·공립학교 2,281개교, 사립 322개교)에서 기 배치된 보건교사(국·공립학교 1,562명, 사립학교 173명)와 기간제를 제외한 순회보건교사수(103명)를 차감한 교사 인원 수만큼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병설학교에 1명이 겸임 배치된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각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6학급 이상 학교에 각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기배치된 경우 그 인원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함

3) 8호봉의 보건교사가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도출하되,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립학교 국가부담금만을 합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비용추계는 '24년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및 산촌 지역 학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등 관련 학교 통계가 부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비용을 추계한 것이므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36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서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⁶⁾, 이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1명의 보건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로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중학교 57.1%, 고등학교 35.9%에 불과하며, 초·중·고·특수 전체 기준 60% 수준임.

6)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교, %)

구 분	전체			36학급 이상		
	학교수	배치학교수 및 배치율		학교수	2인 배치학교수 및 배치율	
초	6,175	5,566	(90.1)	965	646	(66.9)
중	3,265	2,718	(83.2)	119	68	(57.1)
고	2,417	2,327	(96.3)	245	88	(35.9)
특수	194	194	(100.0)	45	22	(48.9)
합계(%)	12,051	10,805	(89.7)	1,374	824	(60.0)

자료: 교육부

따라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할 때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우선시할지, 아니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우선시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도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 지연배치로 인한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입법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간 내 법정 정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 내 학교에 대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정원 확보와 함께 각 시도의 여건과 상황에 맞

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순회 보건교사, 겸임 발령 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구 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